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와
운영 결과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전공

문현식

2010년 2월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와 운영 결과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전공

문 현식

2009년 11월

문현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12월

국 문 초 록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와 운영 결과

문 현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전공
지도교수 김 민호

제주형 자율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총 9개 학교가 지정되어 2007년 3월 1일에 처음 등장하여 200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시범 운영 되었다. 그리고 처음 지정되었던 학교들을 포함하여 총 24개교로 확대된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9년 3월 1일에 운영을 시작했고 2011년 2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6)의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지정·운영 세부 계획에 따르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는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및 국제 이해교육 기반 구축,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자율학교 본래의 지정 의도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정 의도를 구현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정책의 의도는 무엇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떠한 의도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 행·재정적 지원을 했는가?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정책의 운영 결과는 어떠한가? 정책의 의도대로 초기의 성과를 갖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외국의 사례, 국내 학교 자율화 정책,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 및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정책적 의도를 알아 보았으며,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형 자율학교 담당 장학사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은 지정 의도에 미흡했다. 도심 공동화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증가가 미흡했고 외국어 교육은 영어와 중국어에 한정되었으며 교육과정과 학생선발, 교원인사에서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재정지원의 감소로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결과가 나타나는 각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생 수 증가추세 완화 또는 감축 원인은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이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어와 중국어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원인은 첫째, 단위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경험이 부재하고 상향식(bottom-up)의 교원 주도의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영어를 강조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쫓아갈 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징(일본, 중국과 교류의 중심)을 구현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지역 교원들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중심으로 인근 국가간 교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일괄적용하는 학력평가 때문이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근무 교사들이 증가된 수업 시수와 업무량으로 인해 수업과 업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한편, 인사상에서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원인은 보수적인 교원인사문화풍토 때문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폭 감축 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수를 확대시켰고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과 평가에 비추어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원액이 과도했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이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와 운영 결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원할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서 그 교육정책 추진 관련 행위자들의 교육주체에 대한 재인식, 개방적 세계관, ‘유기적’ 평등관에 바탕을 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특히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보다 개방적인 교원인사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 추진에 적합한 학교 내 그리고 교육청 내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와 상향식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별적 학교평가 제도 및 충분한 재원 마련 등의 사회구조적 조건들이 요구된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의 꾸준한 지정과 예산지원 등 일관된 정책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주요어: 자율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 자율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2
3. 연구 방법	3
4. 연구의 모형	4
II.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사회적 배경	6
1.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	6
2. 국내 학교 자율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15
3. 제주특별자치도내 국제적 교육 환경 조성	29
III.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정책적 의도	42
1.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	42
2.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기반 구축	45
3.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운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46
4.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	52
IV.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결과	53
1.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생 수 증가추세 완화 또는 감축	53
2.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교육	54
3.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 발휘 억제	55
4.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폭 감축	59

V. 논의 및 결론	63
1. 논의	63
2. 결론	66
참고문헌	67
ABSTRACT	69
부록	73

표 목 차

<표I-1>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면담자 현황 및 면담 일시	4
<표II-1>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추구하는 변화상	17
<표II-2> 자율학교 정책의 배경 및 과제	18
<표II-3> 일반학교와 자율학교의 비교	20
<표II-4> 자율학교 운영현황	21
<표II-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대상 과제 현황	24
<표II-6> 교과부장관의 시·도교육감으로의 권한 이양·위임 사항(13건)	25
<표II-7>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주요 과제	28
<표II-8> 시·도교육청 조례 및 지침 조치 사항	29
<표II-9> 교육관련 협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절충 결과	36
<표II-10> 개방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비교	38
<표II-11>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비교	40
<표III-1> 제주특별자치도 과대·과밀 초등 대상학교 현황	43
<표III-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공동화 학교 현황	44
<표III-3> 제주시 신제주와 노형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현황	44
<표III-4> 제주시 일도 개발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45
<표III-5> 서귀포시 동홍 개발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45
<표III-6>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외국어 교육 현황	46
<표III-7>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시수조정과 특성화 교육	47
<표III-8>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독서·논술 교육 현황	48
<표III-9>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예체능 교육 현황	49
<표III-10> 제주형 자율학교 공모 교장 자격 기준	51
<표III-11> 제주형 자율학교 교감의 자격	51
<표IV-1>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학생 수 현황(학년도별 4. 1 기준)	54

그 림 목 차

[그림 I-1] 연구의 틀 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물질적 자산보다는 아이디어, 정보 등의 지적 자산이 국민과 국가 전체의 성과를 결정하는 사회이다. ‘앎’ 자체도 중요하지만 ‘앎’을 터득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강조되고 지식 생산을 위한 평생학습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의 출발점으로 학교교육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초·중등교육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 중심이 확고한 한국의 교육제도는 마라도의 두 세 명이 있는 학교에서 대도시의 수천 명이 있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같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내용이나 운영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획일화되어 있다. 지난 70,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이러한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나름대로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 속에서는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걸림돌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이진철, 2008:149).

이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촉발시키기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다양한 개혁 처방들 속에서도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한 가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공동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의 확대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후 2006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거하여 자율학교를 ‘지정¹⁾,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인

1) ‘지정’이란 기존 학교에 어떤 특정한 자격을 주다는 뜻으로 학교를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의 ‘설치’와 구별됨 (교육학대백과사전, 1998: 2061)

프라 구축과 특성화된 학교조성, 과대 학교·과밀 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간 교육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을 세우고 일선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2007년 1월에 제주형 자율학교로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포함한 총 9개 학교를 선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하였다. 그리고 처음 지정되었던 학교들을 포함한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24개교의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9년 3월 1일에 운영을 시작했고 2011년 2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홍경선(2008)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초등영어 프로그램의 실태를 소개하고 기존 초등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한 면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언급하였으나 연구가 영어교육에만 국한되었다. 현순안(2009)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이론적·정책적 배경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제주형 자율학교가 애초에 지녔던 정책의도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자율학교 본래의 지정 의도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정 의도를 구현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정책의 의도는 무엇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떠한 의도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 행·재정적 지원을 했는가?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정책의 운영 결과는 어떠한가? 정책의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갖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방법

가. 연구 범위

연구의 범위는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2007-2008) 중 초등학교에 한정한다. 다만, 학생선발관련이나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2009-2010) 중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사례도 언급한다.

나. 문헌 연구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사회적 배경과 지정 정책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자율학교 관련 논문, 한국의 학교 자율화 조치 관련 문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세부계획」,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 인사 계획」,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보고서>,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보고서>,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들의 학교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자율학교 도입배경과 운영현황, 제주형 자율학교의 법제적·운영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 면담 조사

제주형 자율학교에 주어진 법적, 제도적 자율권을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율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자율학교 담당 장학사와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당시부터 근무하고 있는 교장과 교사 2명, 제주형 자율학교의 前학부모, 학생 등 총 6명이다. 면담은 2009년 3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6회에 걸쳐 면담과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학생의 면담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실태파악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표I-1>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면담자 현황 및 면담 일시

면담자	면담자 직책	연령대	면담 일시
A장학사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관리 담당 장학사(도교육청)	40대	2009. 8. 12
B교장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가학교)	60대	2009. 8. 26
C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학년 담임 교사(나학교)	30대	2009. 4. 1
D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학년 담임 교사(다학교)	20대	2009. 3. 26
E학부모	제주형 자율학교 前학부모(나학교)	50대	2009. 8. 25
F학생	제주형 자율학교 학생(라학교)	10대	2009. 9. 30

4. 연구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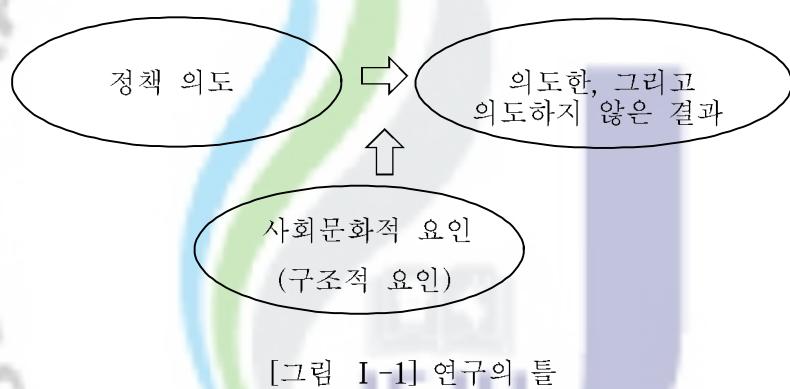
하나의 교육정책이 애초 의도한 대로 그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책은 행위자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역사사회학자인 아브람스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사(또는 사회)는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의도는 역사(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즉, 개인과 구조는 각기 영향을 주는 것만큼 동시에 받는다(Abrams를 김기석, 1995:386에서 재인용).

한국의 중등교육 팽창에 관한 역사·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했던 김기석(1995) 역시 교육정책은 행위 주체들의 역량과 사회적 조건이 합치되는 정도에 따라

실현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교육 장면의 주 행위자인 교육개혁가, 학자,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육사를 만들지만, 자신이 선택한 조건에서 교육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조건 아래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의 변천 또한 의도된 결과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연속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도 본래 의도대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본래 정책 의도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이전에 형성된 한국교육의 사회문화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그림 I-1]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II.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사회적 배경

연구의 이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해 가는 세계의 교육 동향과 국내 정책의 변화과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제주형 자율학교가 탄생하기까지의 배경과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학교교육의 개혁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경쟁을 매우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대비를 위한 국가간 경쟁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초·중등교육의 개혁을 비교 우위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초·중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개혁은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될 우수한 초·중등학생의 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질의 학교교육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 우수교원 양성, 학교재정제도 개선, 학교선택권 확대, 의사결정 구조 개편, 학부모 참여 제도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교육개혁 추진방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행 공교육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교육체제 개편 전략들은 학교 재구조화전략의 대표적인 모델 중의 하나인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도(School-Based Management, SBM)이다. SBM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단위학교에게 포괄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도를 실천

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근거하여 관료화되고 비효율적인 학교 구조를 재편하고, 학교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마그넷스쿨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부터 차터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인 학교경영모델인 교부금지원학교제도를 1998년에 폐지하고, 이 모델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을 허용하는 새로운 학교 모형인 아카데미스쿨을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 차터스쿨

1) 도입배경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방안들 중에는 효과적인 학교 연구, 학교 재구조화 연구, 학교 선택권 확대, 단위학교 책임경영 제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혁적 운동들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김원찬, 2006:41-44).

효과적인 학교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학교가 자체의 교육력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능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오는 학교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특성을 밝혀내고 그렇지 못하는 학교들에게 그 특성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재구조화 논의는 현행 교육체제로는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교육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 학교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 및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역할과 관계의 재구성에 중점을 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차별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고 있는 학교 선택권 확대 제도에 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주요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 선택권에 관한 문제가 언제나 핵심 쟁점으로 포함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공교육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험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도는 학교 재구조화 운동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의사결정의 분권화, 학교의 자율성 확대, 학부모 및 교사의 학교 경영 참여 확대를 주된 관심 대상으로 하는 학교 재구조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교육 개혁의 문제는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재편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학교단위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의 권한을 분권화하고, 학부모·교사·지역사회와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에서 교육과정, 교원 임용, 학생 선발, 학교 재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학교 책임경영 제도는 1990년대 이후 학교 재구조화 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 모형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립·운영되는 학교들 중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교원 임용, 학생 선발, 학교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율권을 전제로 학교현장을 제출케 하여 운영하는 학교 유형이 차터스쿨이다.

차터스쿨은 1990년대에 보편화된 학교 재구조화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학교 선택권, 특성화 학교, 학교 운영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 제도, 교육의 민영화 결과에 대한 책무성,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학교경영에 참여 등과 같은 학교 개혁 아이디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 특징

차터스쿨은 자율성과 책무성에 근거하여 관료화되고 비효율적인 학교구조를

재편하고, 학교 선택권에 근거하여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차터스쿨은 교사, 학부모, 기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사적 개인이나 그룹이 학교의 독특한 교육목적 및 달성해야 할 학생 성취의 기준, 학교의 경영 및 수업, 재정계획 등을 현장의 형태로 제안하고, 교육구나 주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고 운영한다. 차터스쿨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수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비록 공립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법적으로 자율적인 독립기관이어서 주 또는 교육위원회 등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의 개발, 교직원 인사, 예산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법규나 정책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며,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김홍주 외의 논문을 인용한 현순안의 논문 p.22에서 재인용)

차터스쿨에 대한 법적 규정들은 각 주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특정한 현장이나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할 수 있으며, 차터스쿨의 운영 근거가 되는 차터스쿨법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Premark, 1996; 김원찬, 2006).

- ① 학교의 설립 및 운영자의 다양성이다. 차터스쿨은 교사, 학부모, 기업체, 지역사회와의 조직 등 여러 집단들에 의해 설립, 운영될 수 있다.
- ② 현장을 승인하는 권한은 지역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주정부, 주 교육위원회, 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행사한다.
- ③ 단위학교는 법적 독립성(legal entity)을 가진 기관으로 운영된다.
- ④ 지원 대상, 선발, 종파 및 계층별 차별의 금지, 공평한 재정 운영, 학비의 면제 등 공교육의 핵심적인 원리들에 충실히 운영된다.
- ⑤ 현장 또는 계약에 명시한 학교 성과에 책임이 부여된다. 학생이 수행할 학업목표와 평가 방법 등이 현장에 명시되고, 허가기간(통상 5년)이 약정된다. 현장의 개선은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 ⑥ 학업성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는 주 또는 지방정부의 제반법규

나 정책으로부터 유예되도록 한다.

⑦ 학생이나 교사는 강제적으로 배정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입학, 재직하게 된다.

⑧ 학교는 교육구로부터 독립되며, 학교 운영 기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나. 마그넷스쿨

1) 도입배경

마그넷 스쿨 프로그램은 1970년대 들어서도 시정되지 않는 인종문제, 흑백간의 심각한 사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이다. 미국은 경제 여건이 나은 백인과 그렇지 못한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로 사회문제가 심각했다. 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종차별이 불법이 됐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인종차별이 여전히 계속됐다. 교외에 사는 부유층은 질 좋은 공립학교나 값비싼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빈곤층은 여지없이 공교육에 의존해야 했고 공교육의 질은 불신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관리들과 교육부에서는 학생들과 부모가 자발적인 방법으로 교육에서의 인종차별대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래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를 만들면 백인과 흑인 학생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분적으로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그넷스쿨이 태어났다(김민호 외,2006).

2) 특징

마그넷 스쿨은 과학, 외국어, 예술 등 특성화한 교육과정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자석(Magnet)’처럼 끌어당기는 학교이다. 즉 여느 공립학교처럼 학군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

학생의 입학 방법은 추첨과 선발방식이 있다. 추첨방식의 경우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학생 중에서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제비뽑기식으로 학생 인원수에 맞게 추첨하여 뽑는다. 학생과 부모는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알맞은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방식을 통해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시험은 ITBS, Terra Nova, CAT와 같은 전국적이며 전형적인 규격화된 시험 중 독해와 수학 과목이다.

마그넷스쿨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하나 혹은 몇 개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분야를 충실히 교육시켜 학생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졸업 후에도 학생들이 계속 교육을 받기 원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학교마다 다르나 대표적인 마그넷스쿨의 교육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이중 언어 이머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주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영어 실력을 늘리고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으며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스페인어를 더욱 배우고 실력을 늘리면서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나) 미술·공연예술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 음악, 춤, 연극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외부의 여러 유명 예술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다) 국제 CPS 스컬러 프로그램

국제주의와 전문적인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과목을 접목한 심화 프로그램이다. 이 커리큘럼은 학생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과학기술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외국어도 배우게 한다.

라) 몬테소리 프로그램

몬테소리식 교육은 아이들은 그들에게 안전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그들의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하의 학생들은 여느 학교와 달리 예체능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과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자기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보낸다. 학급마다 수학, 과학과 영어, 사회를 가르치는 두 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아 2년 동안 지도한다.

마) 열린교실

각 학년은 벽이 없는 교실에 위치한다. 각 열린공간에서는 8명의 선생님들이 한 팀이 되어 약 200명의 학생들의 지도를 맡는다.

다. 아카데미스쿨

1) 도입배경

영국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폭넓게 이용되어 온 전통이 있다. 단위학교의 교사의 자율성이 매우 크고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과서 선택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약하다. 또한, 교원은 명목상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임용이 가능하고, 학생 선발도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교육과정, 교원 임용, 학생 선발 등에서의 광범위한 자율성은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율이 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김원찬, 2006:45-51).

영국은 최근 1988년 국가 교육과정으로 중심을 옮기는 교육개혁 도입 이전까지는 단위학교의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매우 큰 단위학교 또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다. 영국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통일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전국 단위의 통일된 교과서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영국의 1988년 교육개혁법은 국가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기본 틀을 도입하여 10개 과목의 필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과목별 이수 시간, 학년 단계별 필수와 선택, 학년별 이수 기준 등을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대신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단계별 최소 학업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진급 단계를 4개의 주요 단계(Key stages)로 구분하여 매 단계마다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학생 선발의 측면에서 영국의 단위학교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별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최대한 허용되고 있다. 지역 학교(Community School)와 기부제 통제학교(Voluntary-controlled School)에서는 지역교육청은 학생의 입학 허가와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자일 뿐 실제로는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에서는 지원자가 정원을 넘지 않는 한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지원자가 정원을 넘을 경우, 형제가 그 학교에 다니는지, 학군 내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그 학교와 연계된 하위학교 출신인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학 여부가 결정되며, 학생이 학군 안에 살고 있으나 인근에 마땅한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입학 정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기부제 재정보조학교(Voluntary-aided School)와 법인학교의 경우 입학 허가의 책임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실시한다.

영국에서 교원의 신분은 형식으로는 공무원에 준하여 대우하고 있으나 한국과 같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노사관계의 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원 임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침으로 지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장을 포함한 교원의 임용은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위학교에서는 해당학교에서 교원이 결원 사유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공모의 과정을 거쳐 적임자를 직접 채용하고, 채용된 교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된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는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 정책(Local Management School; LMS)에 따라 1993년 3월부터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배부되는 단위학교 예산 중 최소 85%를 단위학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심의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폭넓게 부여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

의 전통이 매우 강하여 보편적으로 일반학교들도 학교 경영에서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을 학교 교육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학교 교육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를 제정하여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교부금 지원학교(Grant Maintained School; GMS)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도입 이후 교육의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제한된 국가 재정의 범위 속에서 교부금 지원학교에 대해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하여 10-15%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불평등이 제기되면서 1998년 노동당 정부에서 폐지되고, 이들 학교들은 법인학교로 전환되고 제도 시행 이전의 학교 유형으로 환원하였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교부금 지원학교를 대체할 아카데미 스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교육법을 개정하고 ‘Learning and Skills Act 2000’에 근거한 아카데미 스쿨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 특징

아카데미스쿨은 영국의 분권화된 교육체제의 전통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근거한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 정책(Local Management School, LMS) 속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교부금 학교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이전의 단위학교 책임 경영 추진 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 교육에 대한 개입 강화, 학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확대 이외에 아카데미 스쿨 제도는 영국 내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가 매우 강하게 담겨 있다. 영국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 되고 있어 부모와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의 양분 속에서 대다수의 공립학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립학교 개혁을 주된 목표로 하는 아카데미 스쿨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향하는 아카데미 스쿨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과 운영이 지원되지만 학교의 운영은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록 학교 운영을 대폭 개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카데미 스쿨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은 아카데미 스쿨의 설립 및 운영상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설립의 비용 중 10%는 학교 운영 주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둘째, 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학교운영 주체와 학교운영위원회에게 주어진다. 셋째, 학생에게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비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재정 배분 방법에 의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넷째, 아카데미 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단위학교에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학생을 받아들이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의 특성, 지역적 여건, 학부모의 소재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입학 희망자를 지필고사에 의한 성적순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학교운영의 모든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영국의 다른 일반학교와 같은 학교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의 비율이 다르다.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대표 1/3, 지역사회 대표 1/4, 교사 대표 1/4, 지역교육청 공무원 파견 1/4, 그리고 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아카데미 스쿨의 경우, 학교 운영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율적인 결정으로 단위학교 교원과 직원을 임명 및 해고할 수 있으며, 학교 교직원은 필요에 의하여 공모에 의해 직접 임용 절차를 진행하여 임용하는데, 교원들의 임용은 반드시 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2. 국내 학교 자율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가. 단위학교 자율성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에 따른 학교 운영의 획일화를 반성하면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단위학교 책임운영제 연구와

관련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이진철, 2008:149).

자율성(autonomy)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무엇이 '자율적'이라는 것은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율성이란 국가, 기관, 개인의 어느 경우에 사용되든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본래 자율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외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 결정하며(자기 결정), 스스로 통제하며(자기 규율), 실천하는 등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자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신중식, 2000:5).

강영삼(1996)은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학생, 교사, 학교, 교육행정조직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 첫째, 교육의 자율성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유와 책임을 알게 하고, 자율적 질서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서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또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키워줄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교육에서의 자율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에 학문적 자유를 보장해 주고, 교직 전문인임을 확실히 해주어 성숙된 조직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교육에서의 자율은 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 정치적, 종교적 중립이 요구되고, 행정 책임자의 민주적, 자주적 경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에서의 자율은 교육행정의 민주화, 분권화, 자주화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율성에 관한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볼 때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추구하는 변화상을 다음 <II-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추구하는 변화상은 크게 학교 운영 측면과 교육 내용 측면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II-1>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추구하는 변화상

영역	추구하는 변화상
학교 운영 측면	학교운영의 민주화(의사결정 구조 혁신)
	교육청의 간섭·통제 배제
	합리적인 교내 인사
	재정운영의 자율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
	자체 평가 체제 운영
교육 내용 측면	교육활동의 전문화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학생 요구 수렴

자료 출처 : 이진철(2008). 자율학교 정책의 효과 분석, p.150.

나. 자율학교제도

학교교육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은 오래 전부터 대두된 지적이다. 정보·통신 혁명에 따라 지식·정보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으나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낡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은 지원행정으로서의 성격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 관료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진철, 2008:156-157). 이러한 반성은 학교 및 교육행정 체제의 변화 요구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학교 제도가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교육의 획일성·경직성의 원인으로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과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단위학교 자율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자율학교 제도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본래

이 제도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안한 것(이종태 외, 2000:7)으로 1995년 당시 대통령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이 자율학교 정책의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을 신교육체제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제시하였다.

1996년 5월에 작성된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문서는 자율학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자율학교는 탈규제학교로 명명되고 있다.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문제의식의 출발은 유례없는 교육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가 과도하게 규제위주로 되어 있는 탓에 단위학교가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자율학교 정책의 배경 및 과제를 교육체제, 교육행정, 단위학교 운영, 학생·학부모의 교육 요구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정리해보면 다음 <표II-2>와 같다.

<표II-2> 자율학교 정책의 배경 및 과제

영역	추진 배경	세부 과제
교육체제	정보화·세계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변화 교육통치구조 변화 필요성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행정	규제위주 관료 행정 심화	현장 중심 지원행정 실현
단위학교 운영	학교교육의 획일성·경직성 심화	학교의 자율적 운영 학교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학생·학부모 교육 요구	다양한 교육 요구 증대 평준화 정책 보완	학생 중심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

자료 출처 : 이진철(2008). 자율학교 정책의 효과 분석, p.158.

탈규제학교 운영 계획은 1997년에 이르러 당시 교육개혁 추진의 하나로 교육관련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자 종래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

등교육법으로 분리 개편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반영되었다. 이는 이후 1998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될 때에는 탈규제학교의 명칭 대신 자율학교의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김원찬, 2006:22).

자율학교는 현행 교육 관계 법규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장 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그리고 학생 선발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로서, 기존의 경직된 학교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학교운영 체제이다(유균상 외, 2002:20).

이러한 자율학교는 단위학교에서 현행 교육 관계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각급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이루고,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며,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에 알맞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으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1998년 8월에 발표한 자율학교 시범 운영계획에 따라 특성화 학교 및 예·체능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시행하였다. 초기 자율학교는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는데, 최초 14개 학교를 지정한 후 2000년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1개교를 추가로 지정하고, 2001년에는 통합형 고등학교 5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체 201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3년간의 자율학교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시범운영 종합평가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자율학교 제도 개선 방안을 2001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의하여 교육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김원찬, 2006:22-23).

자율학교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는 학교 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1항(교장과 교감의 자격), 제24조 제1항(학년 도의 개시와 종료), 제26조 제1항(학년제에 의한 진급과 졸업), 제29조 제1항(국

정, 검정, 인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39조(초등학교 수업연한), 제42조(중학교 수업연한), 제46조(고등학교 수업연한)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반학교와 자율학교를 비교하면 다음 <표II-3>과 같다.

<표II-3> 일반학교와 자율학교의 비교

구분	일반학교	자율학교
운영상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
자율성	학생 모집	시·도, 학군별 전국
	모집 방법	평준화 지역: 교육감 선발 비평준화 지역: 학교별 선발 평준화 원칙 유지하되, 다양한 전형 방법 적용 가능
	교원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 요구 교장 자격 미소지자 임용 가능 (교감은 제외) 교사 자격증 요구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교원정원의 1/3 활용
	교육 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 외 자율
	교과서	국정·검정 교과서 사용 국민공통기본교과외 자율적 선택 사용 (국내외 및 자체제작교과서 사용 가능)
	학교 운영 위원회	자율 유보
	학기제, 학년제, 수업 연한	적용 자율 유보
학교 현장	없음	공개

<표II-3>에 의하면 자율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초·중등교육법 중 일부조항의 적용이 제외되어 교원의 임용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과서의 선택과 활용에 보다 자율성이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학년제, 학기제, 수업연한의 부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역교육청에 의해 실제로는 자율이 유보되고 있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학교급별 자율학교의 운영현황은 <표II-4>와 같다.

<표II-4> 자율학교 운영 현황

급별	학습부진아동교육	열린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학교	교육감 인정				교장초빙공모제 관련 자율학교 지정교
				예체능	통합형	농어촌소재	기타	
고	-	1(사립)	54(공립30, 사립24)	18(국립2, 공립5, 사립11)	7(공립6, 사립1)	106(공립74, 사립32)	24(공립19, 사립5)	14(공립14)
중	-	-	6(사립6)	1(사립1)	-	4(사립4)	-	13(공립13)
초	-	-	-	-	-	-	-	
총계	-	1(사립1)	60(공립30, 사립30)	19(국립2, 공립5, 사립12)	7(공립6, 사립1)	110(공립74, 사립36)	24(공립19, 사립5)	42(공립42)

자료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9). 자율학교 운영 현황 재구성

<표II-4>에서 알 수 있듯이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학교, 교육감 인정, 교장초빙공모제 관련 자율학교가 지정되고 있으나 학습부진아교육으로 지정된 자율학교와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1) 개방형 자율학교

개방형 자율학교는 기존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설

립된 학교이다. 혁신의지와 경험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교육부총리나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4년)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게 되며, 그에 따른 책무성을 강조한다. 기간이 끝나면 학생의 만족도, 학습능력 향상, 인성, 창의성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협약 이행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주체가 교체되거나 원래의 학교로 환원될 수 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단위학교에 우수한 프로그램과 교사들을 투입하여 질 높은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국가에서 하되, 다양한 운영 주체가 학교경영에 참여하여 인가권자와 설정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단위학교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분리하여 국가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와 감독의 틀을 벗어난 학교의 운영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운영 기본 모형은 크게 국·공립학교에서 전환하는 방법과 사립학교를 전환하는 방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학, 민간단체, 공모 교장에게 협약을 통해 학교운영권을 위탁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시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인가권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권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 위탁 모형’과 인가권자와 공모 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교장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모 교장 모형’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사립학교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이는 기존의 학교법인이 주체가 되어 인가권자와 학교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학교법인에 단위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2) 농어촌 자율학교

농어촌 자율학교들은 농어촌 소재의 일반계열 또는 실업계열 고등학교 가운데 자율학교를 신청하여 지정 받은 학교이다.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한 이유는 농어촌 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나 교사 및 교육재정의 배정 방식

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들 지역의 학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학교를 더욱 낙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자율학교²⁾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학교운영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낙후된 교육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자율학교로 지정 받고 있다(현순안, 2009:21).

일반 자율학교와 같이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교에 일괄 적용되는 교원자격, 교육과정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다. 4·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국가는 국가기준의 설정 등 기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학교와 교육청이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과 선택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 실정과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계획의 추진을 위해 중앙단위와 지방단위로 나누어 각각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앙단위의 3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표II-5>와 같이 제1단계는 2008년 4월에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사건을 계기로 시달린 29개의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2단계는 6월 중에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마지막 단계로 7월 이후 학교단

2) 88개 군(郡)에 ‘농어촌 자율학교’ 육성(2007 교육부 업무보고) : 실업계고 집중 육성을 위해 교육부는 고교단계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산업별 소관 정부부처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위탁하여 특성화하고 100여개를 새로 육성하고,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를 보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취업 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 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결손과 학력미달 최소화를 위해 생애초기부터 기본학습 능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학교는 교장초빙제를 우선 실시, 학생선발·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권을 주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운영된다. 한림고등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첫 자율 학교 지정(‘02.07.10)되어 2006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함.

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II-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대상 과제 현황

구분	교수학습 평가	교원 분야	교육과정 운영	생활진로 지도	학사학적 관리	기타	합계
지침 (즉시폐지)	6	5	7	5	3	3	29
위임/이양/ 개선(6월)	4	6	-	-	1	2	13
합계	10	11	7	5	4	5	42

자료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9. 4. 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고전(2008:209-210)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의 학교 결정주의

첫째, 교육과정·학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교과부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을 폐지하여 지도·감독 및 관여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 지도지침, 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대부분 폐지하며, 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기본지침 등도 폐지하는 것 등이다.

둘째, 단위학교 자율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과 교과위주 교육의 문제점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 공시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강화, 자율감사제의 강화 등 내부의 자율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도록 하며, 학교구성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을 학교 자율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으로서 교육행정 당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하여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2)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초·중등 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표II-6>과 같이 교수학습 평가, 교원 인사, 학사학적 관리 등으로 제시되었다.

<표II-6> 교과부장관의 시·도교육감으로의 권한 이양·위임 사항(13건)

분야	권한 이양·위임 사항
교수학습 평가 (4건)	①초·중·고 학교평가 권한(장관 → 장관, 교육감) ②유치원 운영실태 평가(장관 → 장관, 교육감) ③국립유치원의 장학지도 권한(장관 → 교육감) ④초·중·고 장학지도 권한(장관, 교육감 → 교육감)
교원 분야 (6건)	①교원 시·도교류 추진계획(장관 → 교육감) ②교장 신규 임명권 위임(대통령 → 교육감) ③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대통령령 → 조례·교육규칙) ④교장(신규 제외), 시·도 국장급 장학관, 교육장, 연수원장 임용(장관 → 교육감) ⑤학교급별 보직교사 배치기준(대통령령 → 교육규칙) ⑥시·도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장관 → 교육감)
학사학적 관리 (1건)	①초·중등학교 학교규칙 제정(인가 → 공시)
기타(2건)	①연구학교 지정·운영 권리(장관, 교육감 → 교육감) ②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 해제(부령 → 조례)

자료 출처 : 학교 자율화 조치관련 전국 시·도 부교육감협의회 회의자료(2008.4.17)

를 인용한 고전의 논문 p.210에서 재인용

3)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능 명료화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은 국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획 조정 및 합리적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국가는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

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라. 6·11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인사 등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2009년 6월 11일에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지난 5월 1일 발표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4대 권역별 정책토론회(5.1~12), 당정 정책간담회(5.18), 학부모·교원 대상 여론조사 (5.19)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모든 학교가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범위 내에서 수업시간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던 형태에서 벗어나 학교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 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사 분야에서는 모든 학교의 장에게 교원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 및 비정기 전보요청권 등 교원전보상의 권한을 강화하며, 학교장의 소속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농산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경우,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또는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학습방법 등을 적용하는 자율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학교 중심으로 2010년 2,500여개교로 늘리고, 지정된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의 시행이 가능하게 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교과별 수업시수의 35% 증감 편성,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학교 확대 지정에 따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우려 해소와 동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모교장 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위와 같이 서술한 6·11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 <표II-7>과 <표II-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Ⅱ-7>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주요 과제

과 제	법 령	주요 내용	비 고
교육과정의 자율화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 (신설)	▪ 20%증감, 선택과목신설, 집중이수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등 사항 규정	지침
교사초빙권 확대	초빙교원 임용 업무 처리 요령	▪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10%에서 20%로 상향 개정	지침
교원전보 청권 강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3)	▪ 학교장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권 신설	시행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 비정기전보 요건 및 사유 신설	훈령
지역 · 학교 단위 채용	교육공무원법(제11조)	▪ 근무예정 지역 또는 학교를 미리 정하여 교원 채용 신설	법률
	교육공무원 임용령(제 13조의 3)	▪ 지역 · 학교단위 채용자 전직 · 전보제한 조항 신설	시행령
외부전문가 교직진출	초중등 교육법(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2 교 사자격기준)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신설	법률
	교원자격검정령(제3조)	▪ 교원양성특별과정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이수자의 무시험 검정 기준 신설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6조)	▪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의 무시험 검정 권한 위임	시행령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사립학교법(제54조의 4)	▪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 기간제 교원 정원 외 임용 조항 신설	법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조항 신설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 반일 또는 격일제 기간제 교원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보수 지급 사항 추가	시행령
	공무원승진규정(별표1)	▪ 경력평정에 반일 또는 격일제 기간제 교원 사항 추가	시행령
자율학교의 자율권 확 대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	▪ 자율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율권 확대 규정 추가	지침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 요령	▪ 자율학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조항 추가	지침
시도교육청 운영자율 성제고	지방 교육 행정 기관 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 지역교육청의 국 · 과 명칭 변경 가능 사항 추가	시행령

학교장 중임 심사 강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 교원중임심의 시 적용하는 부적격 판단 근거 제시 조항 삭제	훈령
	교장임기제 실시 업무 처리 지침	▪ 교원중임심의 시 적용하는 부적격 판단 근거 제시 조항 삭제	예규

자료 출처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2009.6.11).

<표II-8> 시·도교육청 조례 및 지침 조치 사항

과 제	법령	주요 내용
행정·기능직 원에 대한 인 사권 강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조 례·지침 (개정)	▪ 학교장에게 행정직원의 전임 및 전보유예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	▪ 학교장에게 행정직원의 전임 및 전보유예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장사료 협 회 및 자율 성 확대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 (개정)	▪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사료 자율 책정 지급
자율학교 자 율권 확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 편성기본지침 (개정)	▪ 자율학교는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적용 예외

자료 출처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2009.6.11).

3. 제주특별자치도내 국제적 교육 환경 조성

가.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³⁾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국민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세계화의 흐름을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1997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이 한국의 정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1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심한 정체 현상과 시장 개방을 선호하는 경제계의 입김,

3) 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61회 개정: 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045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를 구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풀기 위한 제주도 당국의 의도 등이 맞물려 정부가 2001년 11월 19일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시화된 것이다(김민호, 2007:29-30)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66명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주당 초안은 제주도에 한해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 학교 졸업자에 대해 한국의 학력을 인정하며, 내국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외국의 일반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도에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고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는 한국의 교육과정, 교원 자격 등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게 했다(새천년민주당을 김민호, 2007:31에서 재인용). 그러나 제주도내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교섭을 벌여 2001년 11월 29일 아래 <표II-9>와 같이 절충적 성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김민호, 2007:30).

<표II-9> 교육관련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절충 결과

현안	민주당	한나라당	절충안	비고
외국인학교 입학	학교장의 학칙개정으로 완화	삭제 요구	외국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	기존 국내법은 5년 이상 거주자
외국법인학교 설립	일반법인도 대학 설립 허용	삭제 요구	별도 특별법 제정으로 합의	
공교육 문제	교원자격, 교육 과정 등의 자율화	삭제 요구	수정합의	교육법 제61조 중 ‘한시적’ 문구 삭제 후 준용

자료 출처 : 김민호(2007). 세계화에 따른 지역 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p.31.

<표II-9>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의 외국인학교 입학과 외국법인학교 설립, 교원자격과 교육과정 등의 자율화 입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삭제요구에 의해 절충되어진 법안을 바탕으로 2001년 12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주도 당국은 정부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천, 부산, 광양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특구 제도를 도입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 교사 채용, 외국인 학생 입학이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등을 포함하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2006.2.2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기하게 된다(2006.7.1). 더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미비함을 근거로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례를 대폭 주장했던 애초 민주당의 초안이 다시금 등장했다(김민호, 2007:31-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원의 인사상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①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③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⁴⁾

동시행령에는 제29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0조(자율학교 지정절차), 제31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관련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4) 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이후 6회 개정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29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3.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그 밖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30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현장
 3. 학교법인이사장의 의견(사립학교에 한한다) 및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 회의록(사립학교에 한한다)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자율학교의 운영의 특례)

①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 다만, 국어 교과·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 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에 한하며,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교과의 경우에는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따른 학기 및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을 달리 하는 경우 그 조정범위는 각각 동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감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동법 각 조에 따른 각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규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외에 교육과정,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 및 교감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중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국어 교과·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8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⑨ 법 제18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⑩ 교육감은 법 제1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자율학교의 학생선발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학교장간의 성과협약

2006년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된 국무총리와 도지사·교육감과의 성과협약(MOU, 2006.8.23)을 바탕으로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7년 4월에 교육감과 학교장과의 성과 협약이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자율학교 규정에 의하여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과 목표”라 함은 자율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2. “성과 지표”라 함은 성과 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3. “성과 평가”라 함은 성과 목표의 달성을 성과 지표에 따라 평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어 외에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약당사자의 기본책무) 교육감과 자율학교의 장(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이 협약에 의한 성과 목표 및 성과 평가를 상호 존중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성과 관리

제4조(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 교육감은 다음 연도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을 매년 12월 말까지 자율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연도인 2007년도에 대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은 붙임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로 갈음한다.

제5조(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의 설정) ① 자율학교의 장은 제4조의 작성지침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해당부서의 과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학년도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의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성과 지표는 평가 기간 중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급적 계량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변경(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변경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의 제출) 자율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성과 목표 달성을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단) ① 교육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성과평가단은 교직원·학부모·교육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8조(성과 평가의 실시) ①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매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평가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7조에 의한 성과평가단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성과 평가 결과를 4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9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교육감은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평가 결과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우대 방안,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정·보완, 교장·교감 등 교직원 업무실적 평가 반영, 자율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한 자율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자율학교의 장은 이 협약과 그에 따른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의 개정 등

제11조(협약의 개정)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협약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학교 운영 경비를 지원하되, 학교 규모, 프로그램 내용,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해석) 자율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 지침”에 따른다.

2007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학교장
(서명) (서명)

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2호 (2007.1.10)

동조례에서는 자율심의위원회를 제1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2년의 임기 동안 자율학교의 지정과 기타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율심의위원회는 도교육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2007.1.23)

동규칙에서는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 및 기간, 학교현장, 학교장 의견(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사립학교는 이사회 회의록)과 기타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 ·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

감에게 자율학교를 신청하면,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율학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도교육감은 운영비의 특별지원, 교직원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장과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시행하며,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는 도교육감이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를 방문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함을 정하여 놓았다.

나.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

1) 외국의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비교

외국의 자율학교인 차터스쿨, 마그넷스쿨, 아카데미스쿨과 제주형 자율학교는 공통적으로 획일적 공립학교교육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주도의 일률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 교사 자격 부여 및 임용, 재정 지원이라는 획일적 틀에서 벗어나 일반학교보다 폭 넓은 자율권을 부여 받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을 둔 학교 설립 및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차터스쿨은 제주형 자율학교와 같이 학교현장을 제정·공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현장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형태로 운영되나 차터스쿨은 기간이 대개 3~5년인데 반해 제주형 자율학교는 2년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차터스쿨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라는 시장 원리를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 극복을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나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차터스쿨은 교육과정과 학생선발, 인사, 예산 운영 등에서 상급기관의 재제를 받지 않는 법적 독립성을 지니고 교사 또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재직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마그넷스쿨은 학군에 관계없이 제비뽑기식의 추첨 또는 입학시험을 통한 선발로서 학생들을 입학시키나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생의 주소상 거주지가 학교의 학군이거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과대학교·과밀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입·전학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마그넷스쿨은 대다수의 재학생들이 도심에 사는 빈곤층 및 유색인종의 학생들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마련한다는 것과 달리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하여 학교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카데미스쿨은 학교의 설립 주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의 운영을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하나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교 설립 주체는 지방공공단체이고 학교 운영 주체는 도교육감과 성과협약을 맺은 학교장이다. 더불어, 아카데미스쿨은 학교 운영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교직원의 임용과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주형 자율학교에 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더 중시한다.

2) 한국의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비교

새로운 학교 모형으로서 도입한 개방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를 비교해 보면 <표II-10>과 같다.

<표II-10> 개방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비교

구분	개방형 자율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주체	설립·운영을 분리: 외부기관 등에 학교운영 위탁	성과협약을 맺은 학교장
운영상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율성	학생 모집	평준화 원칙 유지하되, 협약에 의해 학교별 모집 허용
	교원 인사	교원 자격제 탄력적 적용 단위학교 인사권 확대: 공모 및 초빙에 의해 교원 확보
	교육 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외 학교자율 무학년제 운영 가능 수업일수 198일 이상
학교현장	공개	공개

<표II-10>에 의하면 개방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생 모집, 교원인사, 교육과정의 자율성 측면과 학교현장 공개 등에서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교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외부 기관에 학교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운영주체들에게 학교경영을 개방한 점, 학교장과 교사는 공모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교원의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보다 더 폭넓은 자율성이 있는 것이 다른 부분이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농어촌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에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낙후되어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형 자율학교정책의 의도 중 하나

인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도 도심공동화학교나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특화된 교육 과정을 내세우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인근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학생들을 유입하여 기울어져 가는 학교의 부흥을 이끌고자 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기존의 자율학교와 구분되는 특징은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교장과 교감이 자격증 없이도 임용될 수 있다는 점, 근무교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외국인 교원의 임용이 관련법상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표II-11>과 같다.

<표II-11>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비교

구 분	자율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특별법 시행령
교육과정 운영	국민공통교과(10과목)의 자율적 조정 운영	자율 운영. 단, 국어, 도덕, 사회 교과만 국민공통교과 적용
교장, 교감의 자격	자격자 임용	자격 불필요
교과용 도서 사용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국내도서 중 자율적 선택	국내외교과서 자율채택. 단, 국어, 도덕, 사회 제외
근무교원 수당지급	없음	특별수당 지급 가능
외국인 교원의 임용	없음	임용 가능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6).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세부 계획

이상과 같이 살펴본 제주형 자율학교에게 부여된 자율권은 다음과 같다.

-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 요청(특별법 제 186조제2항, 특별법시행령 제31조 제9항)
- 교육과정의 자율운영(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 중 국어, 도덕, 사회 제외,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범위 내)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
- 학년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 학기 및 수업일수(단축가능 수업일수는 100분의 20이내)(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호)

- 학년제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100분의 20범위 내 조정 가능)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사용 가능(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시행령 제31조 제7항)
- 학생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 방법 적용가능



III.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정책적 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6)의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지정·운영 세부 계획에 따르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는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및 국제 이해교육 기반 구축,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이다. 본 장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심 공동화 학교 및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 등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 29일까지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 학교)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가능한 초등학교는 도심 공동화 학교 7개교,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로 신제주·노형 개발지역 인근 6개교, 제주시 일도 개발지역 인근 4개교, 서귀포 동홍개발지역 인근 7개교였다.

신청한 광양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장천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7년 1월 10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추천을 거친 후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⁵⁾로 광령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를 지정하였다.

가.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해소

과대학교의 기준은 초등학교는 제주시 지역 총 학생수 2,000명 이상, 서귀포시

5)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초등학교 14개교: 광양교, 광령교, 대흘교, 서귀포교, 제북교, 괴금교, 구좌 중앙교, 납읍교, 서귀서교, 신례교, 일도교, 제남교, 하귀교, 한마음교, 중학교 6개교: 남원중, 신엄 중, 함덕중, 김녕중, 위미중, 한림여중, 고등학교 5개교: 세화고, 대정고, 뷰티고, 성산고, 표선고,

지역 총 학생수 1,200명 이상이다. 중학교는 제주시 동(洞)지역 공립 중학교와 효돈중을 제외한 서귀포시 동(洞)지역 공립 중학교가 대상이다. 과밀학교의 기준은 학급당 평균 학생수 40명 이상인 학교이다. <표III-1>은 과대학교인 신풍교와 동광교, 한라교, 노형교, 동홍교 그리고 과밀학교인 인화교의 연도에 따른 학급과 학생 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III-1> 제주특별자치도 과대·과밀 초등 대상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2000년도		2003년도		2006년도		비 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제주시	신풍교	58	2,455	62	2,487	62	2,336	과 대
	동광교	58	2,385	61	2,351	59	2,068	과 대
	한라교	44	1,750	54	2,283	74	2,820	과 대
	노형교	42	1,709	55	2,382	69	2,554	과 대
	서귀포시 동홍교	15	573	30	1,033	38	1,294	과 대
	제주시 인화교					47	1,887	과 밀

자료 출처: 제주교육 통계연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나. 도심 공동화 학교 증가 억제

공동화학교 기준은 10년 전 학급수에 비하여 10학급 이상 감소한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도심 공동화학교로 기 지정한 학교이다. 아래의 <표III-2>는 도심 공동화 학교인 제남교, 제북교, 일도교, 광양교, 한천교, 서귀포교, 서귀서교의 연도에 따른 학급과 학생 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III-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공동화 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1990년도		2000년도		2003년도		2006년도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제주시	제남교	40	1,889	16	544	17	524	16	472	△24학급
	제북교	30	1,364	18	639	16	525	13	365	△17학급
	일도교	26	1,136	14	470	14	491	14	387	△12학급
	광양교	39	1,745	20	747	20	709	18	596	△21학급
	한천교	39	1,855	22	840	24	851	23	756	△16학급
서귀포시	서귀포교	38	1,883	24	852	21	616	16	468	△22학급
	서귀서교	25	1,164	19	572	16	444	13	362	△12학급

자료 출처: 제주교육 통계연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기준은 과대·과밀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농·어촌 소규모학교이다. 신제주와 노형지역, 제주시, 서귀포시의 과대·과밀학교 부근 소규모 학교는 다음 <표III-3>과 <표III-4>, <표III-5>와 같다.

<표III-3> 제주시 신제주와 노형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현황

급별	학교명	2006년도			2007년도			개발지역에서 소요거리 (단위:km)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초	광령교	10	260	26.0	10	292	29.2	5.1
	물배교	6	101	16.8	6	103	17.2	8.2
	장전교	6	94	15.7	6	98	16.3	12.3
	남읍교	6	126	21.0	6	135	22.5	15.4
중	신암중	6	125	20.8	6	140	23.3	10.4
	애월중	9	252	28.0	7	244	34.9	14.8

자료 출처: 제주교육 통계연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표III-4> 제주시 일도 개발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급별	학교명	2006년도			2007년도			개발지역에서 소요거리 (단위:km)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초	북촌교	6	101	16.8	6	104	17.3	12.4
	대흘교	6	78	13.0	6	80	13.3	9.5
중	조천중	10	329	32.9	10	341	34.1	7.5
	합덕중	11	358	32.5	11	372	33.8	12.4

자료 출처: 제주교육 통계연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표III-5> 서귀포시 동홍 개발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급별	학교명	2006년도			2007년도			개발지역에서 소요거리 (단위:km)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초	신례교	6	115	19.2	6	114	19.0	6.6
	하례교	6	109	18.2	6	116	19.3	6.0
	도순교	6	106	17.7	6	113	18.8	7.5
	법환교	6	179	29.8	6	179	29.8	7.0
중	효돈중	9	315	35.0	10	336	33.6	4.7
	남원중	12	394	32.8	12	401	33.4	14.1
	위미중	6	184	30.7	6	194	32.3	8.5

자료 출처: 제주교육 통계연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2.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외국어교육 및 국제 이해교육 기반 구축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은 영어 관련 프로그램과 중국어 회화로 나눌 수 있다. 영어시간에는 원어민 보조 교사가 투입되는 시간이 있고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과용 도서 선정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외국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표III-6>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를 전달 수단으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영어 몰입교육은 4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어 몰입교과로 1과목을 실시한 학교가 2개교, 3과목을 실시한 학교가 3학교이고 과목의 종류는 수학 4개교, 과학 2개교, 음악 2개교이다.

중국어회화는 외부의 전문 강사가 전문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1개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1개교이다.

<표III-6>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외국어 교육 현황

학교명	대상 학년	시수	프로그램
광령 초등학교	전학년	4~6	영어회화, Reading(4~6학년), 수학 몰입교육(3~6학년)
광양 초등학교		2~7	영어회화, 수학몰입교육(4~6학년), 과학 몰입교육(3학년), 음악 몰입교육(3~6학년)
대흘 초등학교		2~4	생활영어, F(Foreigner)-Day(영어로 생활하는 날) 운영
서귀포 초등학교		8~9	기초 영어(1학년), 영어회화(학급 당 2개의 수준별 소그룹 편성 운영), 수학·과학·음악 몰입교육, 중국어 회화
제주북 초등학교		4~7	영어회화(학급 당 2개의 소그룹 편성 운영), 수학몰입 교육, 중국어회화(5~6학년)

3.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운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가. 교육과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형 자

율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어, 도덕, 사회교과를 제외하고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 범위 내 조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중 5개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3~6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를 바탕으로 하고 1~2학년 교과는 우리들은 1학년,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활동수학, 체육, 미술, 음악, 영어를 주당 시수를 증배하고 교과의 시수를 일정부분 감축하거나 할애하여 특성화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III-7>과 같다.

<표III-7>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시수조정과 특성화 교육

학교명	학년별 주당 시수조정	기본교과 시수조정	특성화 교육 ⁶⁾
광령 초등학교	전학년 2시간 증가	감: 즐거운 생활, 실과, 체육, 특활 증: 영어	영어회화, Reading, 수학몰입교육, 독서논술, 논리수학, 창의미술, 나눔음악
광양 초등학교	1, 2, 3, 5, 6학년 2시간 증가 4학년 1시간 증가	감: 실과, 미술, 체육 증: 영어	영어회화, 수학·과학·음악몰입교육, 독서논술, 재능교육
대흘 초등학교	1, 2학년 2시간 증가 3, 4학년 4시간 증가 5, 6학년 3시간 증가	감: 특활 증: 수학, 영어, 과학, 체육	생활영어, F-Day, 독서논술, 활동수학, 창의과학, 건강, 심성, 창의
서귀포 초등학교	1, 2학년 5시간 증가 3, 4학년 4시간 증가 5, 6학년 3시간 증가	감: 즐거운 생활, 실과, 미술, 음악, 체육	기초영어, 영어회화, 수학·과학·음악몰입교육, 독서논술, 한자, 중국어회화
제주북 초등학교	전학년 3시간 증가	감: 즐거운 생활, 실과, 체육	영어회화, 수학몰입교육, 독서논술, 중국어회화, 체력단련

<표III-7>에 따르면 각 학교의 학년마다 즐거운 생활, 실과,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교과와 특활에서 감축한 시수와 주당 1~5시간 증배한 시수를 주로

6) 기본교과의 연간 기준 시수에 포함되거나 재량활동 또는 특성화 과목의 시수를 증배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독서논술과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중 5개의 초등학교의 특성화교육을 독서논술교육과 예체능교육 부문으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1) 독서 · 논술교육

독서 · 논술교육은 다음 <표III-8>에서 볼 수 있듯이 제 1기 제주형 자율학교 모두 주당 1시간씩 실시하고 있고, 외부의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학교가 3개교, 국어교과 시간에 외부의 전문 강사와 담임 교사가 팀티칭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2개교이다.

<표III-8>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독서 · 논술 교육 현황

학교명	대상 학년	시수	프로그램
광령 초등학교	전학년		학년별 독서논술교재를 활용하여 독서 · 논술 · 토론 교육
광양 초등학교	3~6학년		논술 · 토론 교육
태홀 초등학교		1	국어교과의 주당 1시간을 독서 · 논술교육시간으로 할애하여 외부의 전문 강사와 담임교사가 팀티칭으로 교육
서귀포 초등학교	전학년		독서 · 논술 교육
제주북 초등학교			국어교과의 주당 1시간을 독서 · 논술교육시간으로 할애하여 외부의 전문 강사와 담임교사가 팀티칭으로 교육

(2) 예체능교육

예체능교육이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되는 학교는 3개교로서 재능교육교과로 외부 전문 강사와 담임 교사가 지도하는 1개교, 심성과목으로 외부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1개교, 체력단련교과로 태권도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1개교가 있다.

<표III-9>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예체능 교육 현황

학교명	대상 학년	시수	프로그램
광령 초등학교			
광양 초등학교	전학년	1~3	*재능교육- 외부 전문 강사와 담임 교사가 교육 1~2학년: 1개 부서(체조부) 주당 1시간 운영 3~4학년: 7개 부서(관악부, 풍물부, 애니메이션부, 수채화부, 연극부, 생활공예부, 핸드볼부) 중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를 1개 택하여 주당 2시간씩 1년 단위로 운영 5~6학년: 7개 부서 중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를 1개 택하여 주3회 3시간씩 1년 단위로 운영
대흘 초등학교	전학년	1	*심성- 뇌호흡 및 명상, 심성계발 및 자아성장, 마술, 웃음치료 등을 외부 전문 강사가 교육
서귀포 초등학교			
제주북 초등학교	전학년	1	*체력단련- 태권도를 외부 전문 강사가 교육

위의 <표III-9>에서 알 수 있듯이 광양초등학교는 학년별로 1-7개 부서를 조작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소질에 적합한 부서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체능교육을 학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있고, 대흘 초등학교도 뇌호흡과 명상, 마술, 웃음치료 등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학생선발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반 학교들이 학구 내 학생만 전·입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과대·과밀 대상 초·중학교에서 해당학교로 전·입학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기고사를 제외한 방법으로 자체규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과대·과밀 대상 초·중학교 이외의 학생은 전·입학이 불가능하다.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의 장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학생이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로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매 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계획에 의한다.

학생선발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자율학교의 운영의 특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제4항⁷⁾에 의한다.

다. 교원인사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의 자격은 교육감 임명 시에는 현직 교장이고 공모제 임명 시에는 공모제 교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 <표III-10>과 같다.

7) 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의 통보), 제24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81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지원), 제82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표III-10> 제주형 자율학교 공모 교장 자격 기준

구 분	대상 학교	자격(공모의 경우)	비 고
제주형 자율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교장 - 교장 자격을 소지한 전문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 교장 자격을 소지한 현직 교감 - 자율학교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공모제 운영 세부 계 획은 추후 결 정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9).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인사 계획

<표III-10>의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의 자격을 보면 현직 교장과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 교장 자격을 소지한 현직 교감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없더라도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으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자율학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자격자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감은 다음 <표III-11>과 같이 현직교감이거나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으로 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표III-11> 제주형 자율학교 교감의 자격

구 分	대상 학교	자격	비 고
제주형 자율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교감 - 교감 자격을 소지한 전문직 (장학사, 교육연구사)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9).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인사 계획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감은 교장의 전보 내신을 반영하여 임용할 수 있고 학교 근무연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1회(1년)에 한하여 구역만료자를 제외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장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전입교원의 50%이내에서 전입을 내신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교원 인사 시 학교장 전보내신을 적극 반영한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교사는 교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 근무연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1회(1년)에 한하여 구역만료자를 제외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기간에 재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가산점(1년에 0.12점)을 부여한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일반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기준 이상으로 9학급까지는 학교당 1명을 고정 배치하고 10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한다.

4.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2007년에는 18억(도청 8억, 교육청 10억), 2008년에는 18억(도청 9억, 교육청 9억), 2009년에는 34억(도청 9억, 교육청 25억)으로 이루어졌다. 이 예산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제1기 9개교에는 연간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였고, 제2기 24개교 중, 신규지정학교에는 학교당 연간 1억, 재지정학교에는 학교당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하에 학교 규모와 특성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신규지정학교에는 9400만원-1억원, 재지정학교에는 4800-5000만원을 학교별 차등하여 지원했다. 그리고 추후, 재지정학교에는 1300-15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IV.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결과

1.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생 수 증가추세 완화 또는 감축

2007년 1월에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기 전 광양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광령초등학교는 제주시 중심권과 인접해 있음에도 인구 유입이 저조하여 학교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흘초등학교는 거주인구와 학령 아동의 감소로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처지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 속에서 B교장과 C교사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신청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신청한 이유는 도심공동화현상의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구도심권의 상권이 허물어지고 주민들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여 빠져나가 이 지역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B교장)

제주형 자율학교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소학교 살리기일 것입니다. 전에도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한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모집해 오는 노력을 해가면서까지 학교를 살렸다고 합니다.(C교사)

이에 광양초등학교와 광령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신청하고 지정된 후, 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시내권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등에 대한 내용을 과대·과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비롯하여 안내자료, 지면과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 학교 신문 등을 통해 홍보에 노력하였다.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들의 학년도에 따른 학생 수 변화는 다음 <표IV-1>과 같다.

<표IV-1>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학생 수 현황(학년도별 4. 1 기준)

학교명	2006	2007	전년도대 비증가율 (%)	2008	전년도대 비증가율 (%)	2009	전년도대 비증가율 (%)
광양초등학교	596	591	-0.8	553	-5.5	519	-6.1
광령초등학교	260	302	16	323	6.9	339	4.9
대흘초등학교	78	148	89	156	5.4	163	4.4
서귀포초등학교	468	495	5.7	545	10	541	-0.7
제주북초등학교	365	377	3.2	476	26	459	-3.5

자료 출처: 제주교육 통계연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기 전 5개교의 2006학년도 학생 수와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2007학년도의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광양교를 제외한 4개 교가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흘초등학교는 이전 재학생의 2배 가까이 학생 수가 늘어나 가장 활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서귀포교와 제주북교도 이전의 학생 수 감소 경향을 감안하면 광령교와 마찬가지로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기간인 2007년과 2008년를 포함하여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시기인 2009년 까지는 광양교를 제외하고 학생 수 증가 추세가 완화되었고, 2009년에 서귀포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감축하는 현상을 보인다.

광양교는 2007년에만 이전보다 학생 수 감소가 주춤하고 이후에는 다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 중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의도 부합에 미흡하다.

2.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교육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행해지는 외국어교육은 2개교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어 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어교육에 치중되고 있다. 영어사용능력은 세계화·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한 언어에

편중된 외국어교육은 학교 간 엇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양산하게 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며 익혀야 할 국제 이해 능력 향상에 디딤돌이 되어 주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은 A장학사와 C교사, F학생의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학교마다 영어교육에 치중하는 이유는 국제자유도시 인재 육성이라는 목적과 사회의 영어 강조 경향을 반영한 것인데 학교마다 한, 두 개 정도 특색 있는 외국어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하려 하고 있습니다.(A장학사)

영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자율학교 설립 취지 중 하나가 세계화·국제화 교육에 대비한다는 것 때문입니다.(C교사)

영어도 재미있긴 하지만 사실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데 일본어 수업이 없어서 아쉬워요.(F학생)

3.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 발휘 억제

가. 학교평가를 감안한 소폭의 교육과정 개편

제주형 자율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목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특화된 교육과정이다. 다른 일반학교들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배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닐 수 있는 이점이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관련한 자율성은 국내·외에서 출판된 교과서의 사용과 조기진급·졸업제의 활용, 교육과정의 제한적인 자율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교과서의 선정과정을 C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내·외 교과서의 선정은 먼저 담당 선생님들이 교재를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교재들을 간추립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채택

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C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년도와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에 대한 자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교과부에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실질적으로 혼용하지는 않고 있어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국가정체성과 기본적인 사회성과 관련되는 국어, 도덕, 사회, 습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제외한 국민공통교육과정 교과의 연간 수업 시수의 1/2 수준을 감축 또는 증배 가능하나 5개교 학교 현장에서는 학력중시 풍토와 과도한 업무 등의 관계로 즐거운 생활과 실과,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관련 교과의 시수를 편중적으로 줄이고, 학년당 1~5시간을 늘리는 선에서 자율성이 그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활용이 미흡한 이유를 A장학사와 C교사, E학부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시수를 많이 줄이면 제학력 평가 등 학력적인 면에서 다른 학교들과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아이들의 학력에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장학사)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리함에 있어 자율학교라고 해서 기타로 놓고 차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것들을 자율학교에도 적용하고, 학교평가나 감사 또한 일반학교와 똑같습니다. 학력평가도 마찬가지지요. 학력평가에 있어 자율학교는 특별한 학교인 만큼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도 우수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자율학교평가를 더 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많은 부담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교과들을 자율적으로 축소 운영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특성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 교육시수를 맞춰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장의 자율학교 운영방침이 어떤가 하는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포기해야 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교육시수만 늘려야 하지요. 늘리는 것도 한도가 있어 많은 걸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모든 자율학교에서 일반 교육과정을 포기하는 과감한 시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과정을 모두 진행하며 특성화교과를 더해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이 자율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부분이지요. 그렇기 위해선 교육청에서 약속한 자율성을 단위학교에 적극 넘겨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교사와 재정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C교사)

학생에 대한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가르침입니다. 학생들의 배움 정도는 평가를 통해 가장 쉽게 가시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들은 출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D교사)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나 체육, 미술, 독서, 영어, 발명 등 학교 당 하나 정도에 집중하여 ‘그 학교면 무슨 교과’식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과감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E학부모)

나. 상급 제주형 자율학교의 하급 제주형 자율학교 학생 흡입력 부재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의 장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학생이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로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입학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매 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계획에 의한다. 그러나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상급 제주형 자율학교로 입학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규정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A장 학사의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 중 초등학교는 인기가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인기가 없어서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A장학사)

다. 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인사 관행

학교장의 리더쉽과 역할 수행에 따라 학교의 교육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특색 있는 부문이 많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장 역할은 학교에 미

치는 영향이 보다 더 중대하다. 이러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의 취지로 도입된 공모제에 의해서도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제1기 9명의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장 중에서 공모제에 의해 임명된 교장은 없다. 다만, 제2기 24명의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 중, 한마음초등학교 교장이 공모제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첫 사례이다.

교감은 특별법에서 자격이 불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세운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인사 계획에는 교장은 공모제에 의해서 자격이 없어도 되지만 교감은 실제로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시키는 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 아래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특별법에 명시된 외국인교원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무교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은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 특혜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의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였다. A장학사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근무교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조례지정을 위한 법제심의논의 중 도지정연구 학교 가산점과 장학자료개발 가산점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교원 특혜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A장학사)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때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장학자료 등을 개발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에 필요한 선택 가산점(1년에 0.12점)도 부여했으나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때에는 학교 수의 증가로 인해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점이 보류되었다.

학교장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에 대해서 전입교원의 50%이내에서 전입을 신청할 수 있고, 구역만료자를 제외한 교감과 교사는 학교 근무연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1회(1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B교장과 D교사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자율권의 정도는 제한적이다.

교원 내신에 관한 규정을 학교 교원의 20-30% 정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0%는 너무 많고 20-30%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2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으로 인해 제주형 자율학교 수가 증가했고 유능하다고 평이 난 교사와 달리 남는 교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큰 학교로만 우수교사가 몰릴 가능성성이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로만 우수교사가 가고 다른 일반학교로는 그렇지 않은 교사만 모일 수도 있기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존재합니다.(B교장)

2007년 근무자 26명 중 11명의 교원이 전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입오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08년 근무자들은 대부분은 내신을 썼으나 반려되었습니다. 구역만료자를 제외한 교원들은 전보를 원하지만 사실상 내신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D교사)

4.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폭 감축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 예산을 2007년과 2008년 때의 18억 원에서 2009년에 34억 원으로 전 보다 늘렸음에도 학교 당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A장학사의 다음 언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수 증가와 더불어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볼 때 학교 당 2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예산 34억은 원래 도의회에서 삽감되면 2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교육청에서 28억 원을 책정했는데 도의회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인기가 좋다고 판단하여 6억 원을 지원하여 34억으로 잡힌 것입니다. 교육청에서의 처음 예상은 올해 보다 많은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를 신청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될 형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정된 학교에 보다 더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감을 비롯한 다수가 제주형 자율학교와 다른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와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평가자료를 비추어 볼 때 학교당 2년간 4억 원의 예산은 조금 많다는 판단 하에 제2기 때는 신규지정은 1억, 재지정은 5천만 원으로 미리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모집 전에 공고했습니다. 제1기 때의 예산이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방과후 학교 수강에 지원되거나 교원의 해외연수 지원 등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A장학사)

대흘초등학교의 한 前학부모는 제주의 소리 자유게시판에 ‘자율학교를 떠나온 학부모가 드리는 글’을 통해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과 정착을 바랐다(제주의 소리, 09.03.01). 이 글에서 학부모는 “2년 전 제주도교육청은 ‘특성화교과와 방과 후 학교, 통학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대흘초등학교의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운영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대흘초등학교로 전학 간 65명의 아이들은 2년간 순박하고 해맑은 농촌 아이들과 어울려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대흘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 연간 2억원씩 지원하던 자율학교 운영비를 5천만원으로 줄이고 방과 후 학교와 통학버스 운영도 수익자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라며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변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처음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학생들을 모집할 때부터 운영기간은 최고 4년까지이며 2년이 끝나 다시 지정 될 경우 운영비 지원금은 5천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더라면 이 같은 상실감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말을 이었다. 더불어 “제주도교육청은 불과 2개월 전 도의회에서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하다며 34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놓고 집행도 하기 전에 14억원이라는 거액을 불용 처리 하고 나머지 20억원 정도만 자율학교 운영비로 쓰겠다고 합니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주시의 과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학교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자녀를 둔 또 다른 E학부모도 이에 공감한다.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일반학교와 비교적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들의 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 자녀가 다녔었던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전학을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의 감소 때문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처음 운영 2년 동안은 2억원을 지원했는데 재지정 됐을 때는 1억 5천만원이나 1억도 아니고 5천만원으로 너무 한꺼번에 줄어들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E학부모)

지원금의 축소와 맞물려 2009년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계획서에는 현재 2011년으로 예정된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시에 세 번째로 재지정된 학교

에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 추후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A장학사와 B교장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일단 제주형 자율학교의 3회 지정 시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는 것으로 방침을 내렸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를 벤치마킹 하는 등 평가가 좋고, 작년에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화 되기도 했었지만 토민들도 좋게 생각하는 측면이 강해서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A장학사)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기에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의논을 하는 자리가 있겠지만 예산지원이 없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학교군 지원도 있고 교복투학교 지원도 있는데 원래 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제주형 자율학교가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예전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학생들도 전처럼 이탈하게 되어 한순간에 이전의 상황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춰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지 이제까지 혜택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학부모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혹시 학력과 재능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5, 6학년 학생들은 안 해도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학년들은 2년 반 동안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공부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좋다고 하기보다는 2년여 할 바에야 그 기간 동안 기존의 교육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교육과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교육의 효율이 떨어지기에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꾸준한 재지정과 예산지원은 필수입니다.(B교장)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에 일정액을 지원하며 특별 재정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지침을 보내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집행하되, 수학여행비, 해외연수비(학생, 교직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회성 이벤트 프로그램, 교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전액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나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산 편성·운영 자율성 저해로 인해 각 학교에서 학생 유치 또는 실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된 학교 시설 교체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따랐다.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B교장의 의견에도 나타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원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교실 칸막이나 선풍기, 예어컨 등의 시설을 하는 것은 안 되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체험학습 갈 때나 컴퓨터 등의 기자재, 관악기 등 교수학습자료 구입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 학교장에게 더 많은 재정지출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뒤따라야 합니다. 10명 먹을 밥을 짓는 밥솥과 100명 먹을 밥을 짓는 밥솥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밥솥과 창작, 밥 지을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밥을 지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지나친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재정적인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교장)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김기석(1994)은 인간은 역사를 만드나 자신이 뜻하는 대로 또는 희망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그가 역사를 창조하는 순간에 그가 서 있는 현실, 조건 및 환경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역사는 의도만큼, 또는 그 이상,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연속이라 하였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도 애초의 지정 의도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지정 의도에 미흡한 결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대로 이루어진 운영 결과와 지정 의도에 미흡한 운영결과, 그리고 지정 의도에 미흡한 운영결과가 나타났다면 미흡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사회 문화적, 구조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생 수 증가추세 완화 또는 감축 원인

제주형 자율학교 제1기 전반기인 2007년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생 수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제1기 후반기인 2008년과 제2기 시작인 2009년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생 수 증가 추세가 완화 내지 오히려 감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수요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가 뚜렷하지 않고 학교 교원의 자율학교 근본 취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우수 교사가 자율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의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확립되지 못하고 교육 공동체에 대한 지도력 발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당국의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의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특성화와 교장 공모 실시 및 파격적 재정 지원 등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집중적 지원보다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 행·재정적 지원을 축소한 것은 형평성을 강조해 온 공교육의 오랜 관행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나.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교육 실시 원인

자율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어와 중국어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위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경험이 부재하고 하향식 (top-down) 교육행정 구조와 풍토 속에서 상향식(bottom-up)의 교원 주도의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영어를 강조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쫓아갈 뿐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닌 지정학적 특징(일본, 중국과 교류의 중심)을 구현해 내지 못하고 국가주도 교육정책 시행의 오랜 관행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지역 교원들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중심으로 인근 국가간 교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 동북아경제 블록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 발휘를 억제하는 원인

제주형 자율학교가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학력평가로 인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육과정을 대폭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만의 잣대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와 똑같은 잣대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평가함으로써 이중잣대의 적용에 의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가로막는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근무 교사들이 증가된 수업 시수와 업무량으로 인해 수업과 업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3항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의 지급권한이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유야무야되어 버렸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했을 때 주어지던 0.12점의 점수가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전에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특혜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각 아래 폐지되어 결국, 1년에 0.12점의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점수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고정된 교사의 인원으로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하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은 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주체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데 미약하여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충분한 자율권 발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인사상에서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원인은 교원인사문화풍토 때문이다. 다양하고 특화된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지녀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의 학교장 등용이 필요하나 법령에 명시된 교장 공모제와 교감 자격미소지자도 임용 가능하다는 교원인사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교원인사문화가 자격증으로 검증된 제한된 인재들만으로 임용을 하는 보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라.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폭 감축 원인

재정상에서 전체적인 지원예산은 증가했으나 단위학교당 지원액이 감소하고 지원액의 활용범위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한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수를 확대시켰고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과 평가에 비추어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원액이 과도했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상이 요구되는 21세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당국자들이 여전히 19세기나 20세

기의 산업사회의 인재상에 미물려 이른바 ‘기계적’ 평등주의 교육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에 미흡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 의도와 운영 결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는 아무리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원할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서 그 교육 정책 추진 관련 행위자들인 도의회와 도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원 및 학부모들의 교육주체에 대한 재인식, 개방적 세계관, ‘유기적’ 평등관을 바탕으로 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특히 폭 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보다 개방적인 교원인사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지 행위자들의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만이 아니라, 제주형 자율학교 추진에 적합한 학교 내 그리고 교육 청 내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와 상향식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별적 학교평가 제도 및 충분한 재원 마련 등의 사회구조적 조건들이 요구된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의 꾸준한 지정과 예산지원 등 일관된 정책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삼(1997).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16(1), 31-46.
- 고전(2008). 학교 자율화 정책의 특성과 과제 -5·31 교육개혁에서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까지-. *초등교육연구* 21(3), 199-221.
- 김기석(1994). *교육사회학 탐구II*. 서울:교육과학사.
- 김민조(2003). “교육통치구조 개혁방안으로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현장학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1(3), 1-27.
- 김민호(2007). 세계화에 따른 지역 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2), 23-48.
- 김민호(2009). 세계화에 따른 제주 지역 국제학교 설립 및 일반계 학교의 대응 방안. *초등교육연구* 14(1), 103-126.
- 김민호 외(2006). *국외출장 보고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 김원찬(2006). 자율학교 운영 국제 비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현진(2006). 한국의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조사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1), 313-338.
- 김홍태(2000). “차터스쿨(ChaterSchool) 운영의 실제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18(3), 385-407.
- 박세훈(2003). 한국의 자율학교와 미국의 차터스쿨 비교 연구. *교육학연구* 41(4), 207-229.
- 신중식(2000).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율화 개선방안 연구. *교육논총* 20(1), 5-37.
- 유균상 외(2002). KEDI 학교종합평가안내 자율학교 평가위원 연수교재. 한국 교육개발원.
- 이병환(2008). 서구 대안학교의 동향과 특성 비교. *한국교육* 7(1), 121-140.
- 이종태 외(2000).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진철(2008). “자율학교 정책의 효과 분석”. *교육연구* 22, 141-161.
- 장수명(2002). “미국 공립학교에 대한 전쟁:학교 민영화와 교육의 상업화”. *한국*

- 교육 29(2). 607-615.
- 정제영(2008). 학교 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6(2), 415-435.
- 최금진, 배장오(2003). “자율학교의 자율권 활용실태 및 교육효과 분석”. 교육학 연구 41(2), 253-275.
- 현순안(2009).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과 개선방안 -제1기 시범운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경선(2008). 제주형 자율학교의 초등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 언어연구 24(3), 629-6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6).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지정·운영 세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7).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인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7).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종합평가 지표 편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지정·운영 세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9).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인사 계획

2008학년도 광령초등학교 교육과정

2008학년도 광양초등학교 교육과정

2008학년도 대흘초등학교 교육과정

2008학년도 서귀포초등학교 교육과정

2008학년도 제주북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jje.go.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www.council.jeju.kr>

제주의 소리 <http://www.jesusori.net/>

Abstract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Moon, Hyun Sik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Method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Jeju self-governing schools, which included 5 elementary schools, 3 middle schools and 1 high school, were designated first on March 1, 2007 and had been operated demonstratively for 2 years until February 28, 2009. In the 2nd term, a total of 24 Jeju self-governing schools including the schools designated first started their operation on March 1, 2009 and will end the operation on February 28, 2011.

According to Jeju self-governing school (i-good school) designation and operation plan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2006), the designation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intended to solve the problem of large-size or overcrowded classes,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mong areas within the province, to lay the base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well-matched with the province's status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to foster specialized schools through giving autonomy in curriculums and school administration, and to construct differentiat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in the Jeju area for creating internationalized education environment.

This study focused on how much the original intentions of designating self-governing schools have been implemented by Jeju self-governing school and, if they have not been implemented, what the causes of failure are. That is, this study attempted sociological analysis on why the intentions of designating Jeju self-governing schools could not be implemented and, for this, we set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social background of ‘designation’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What are educational and 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designation’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Second, what is the intention of the Jeju self-governing school ‘designation’ policy? With what intention di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s Office of Education designate Jeju-style self-governing schools and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Third, what are the results of the Jeju self-governing school designation policy? Have the policy produced results as it intended? If not, what are the causes of the failure?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based on foreign and domestic cases of school self-governing policies that emphasize individual school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nd investigated the intentions of the Jeju self-governing school designation policy. In addition, we surveyed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by interviewing school supervisors in charge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and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nadequate implementation of the intentions of Jeju-style self-governing school designation was caused by factors as follows.

The reason for the slow increase or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t Jeju self-governing schools was, first, that the characterization of education programs at Jeju self-governing schools was not evident. Second, the principal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did not have a clear mind for the operation of self-governing school. Thir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shrank i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Jeju self-governing schools.

The reason for the confinement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characterization programs to English and Chinese was, first, that individual schools did not have experience in autonomous organization of curriculums and there was no school culture of bottom-up curriculum development led by field teachers. Second, only following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emphasizing English, the program failed to reflect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the center for exchange with Japan and China. Third, teachers in the Jeju area were not aware of the local community's potential for exchange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 reason that Jeju self-governing schools failed to enjoy their autonomy in curriculums was, first,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applied a uniform scholastic ability test to all elementary schools in the province. Second, teachers at Jeju self-governing schools felt burdened with increased class hours and workload but without compensations for that.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that autonomy in personnel management was not exercised was the conservative culture of teacher personnel management.

The reason for the marked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to Jeju self-governing schools was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expanded the number of designated Jeju-style self-governing schools in the 2nd term, and based on the results of operation and valuation of the Jeju self-governing school in the 1st term, the Office of Education judged that the amount of subsidy to the self-governing schools in the 1st term had been excessi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ed above,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designation and the results of operation of the schoo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ven if the educational policy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is desirable, it cannot bring successful results without social conditions for supporting the policy. Second, one of social conditions for supporting the educational policy of Jeju self-governing schools is involved parties' understanding of and consensus on Jeju self-governing school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educational subjects, open view of the world, and 'organic' view of equity.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foster open culture of teacher personnel management in order to recruit a wide variety of talented people. Third, in order to induce bottom-up decision making structure in the school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for promoting Jeju-style self-governing schools, we need to meet socio-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incentives for teachers, differentiated school evaluation system, and sufficient fund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win the confidence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through consistent policies in terms of the designation of self-governing schools, budget support, etc.

Keywords: Jeju self-governing school

<부록>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2호(2007.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의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4.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6.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율학교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 (심의 요청) 도교육감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자율학교 신청 학교장, 기타 필요한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통보)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2007.1.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신청·지정 및 이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지정 절차)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현장

3. 학교장 의견(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사립학교는 이사회 회의록)

5. 기타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기간)

자율학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다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입학 전형)

①초등학교의 자율학교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다만, 초·중학교에서 이 밖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②고등학교의 자율학교장은 전국적으로 지원에 위하여 필기고사 이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학교장이 입학 전형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입학전형일부터 10개월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직원에 대한 우대)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시범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운영의 공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생행정 및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현황을 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 현장의 개정)

자율학교의 장이 학교현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제10조 (협약의 체결)

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장과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자율학교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장이 제1항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달성 정도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며, 종합평가는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지도 등)

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이 당초의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자율학교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장학지도와 감사 및 조사는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지정 취소)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현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